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부과취소

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을 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1. 납세자 : ***
2. 부과취소사유 : 국세 경정
3. 건수 및 세액

(단위:원)

부과취소 건 수	당 초	취소(경정)	차 액
1건	15,434,010	11,710,820	3,723,190

- 붙임 1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결의결정서 1부.
 2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부과취소내역서 1부.
 3. 국세청통보내역 및 과세내역 1부. 끝.

주무관 **김용경** 지방소득세3팀 **최선균** 세입관리팀장 **이정현** 기획경제국장 전결 06/07
 장 **김용운**

협조자

시행 세무2과-20174 () 접수 ()
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 전화 02-3423-5732 /전송 02-3423-8895 / young6912@gangnam.go.kr / 부분공개(6)